

사립대학  
지적사례



# 사립대학 시설분야 지적사례



## 1. 시설·물품·재산

### 시설관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학사운영에 필요한 교육연구용 시설·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시설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건축법」 제11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도록 되어 있음

#### <사례 1>

○○대학교는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설계도서 없이 ○○동 산 44번지에 기숙사, 체육관 및 강의동 등 3개동을 증축할 예정으로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재공사하게 되었으며, 특히, 같은 증축공사의 설계용역(계약금액 : 1,666,500천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시설종합계획 없이 발주함으로써 사업규모 변경(46일), 설계 인허가 지연에 따른 보완(531일), 설계진행 중 건축구조법규 개정에 따른 설계수정(104일) 및 외국컨소시엄 자문(185일) 등으로 인하여 893일이 지연되어서야 용역설계도서가 최종 납품되었고, 그 결과 시공 과정이 늦춰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또한, 당초 설계과업 지시조건 변경에 대해 (주)○○건축사사무소가 추가 설계용역비(당초 1,666,500천원)로 2,547,000천원을 요구하자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사회의 예산소요 변경계획 등의 심의·의결 없이 건설본부 제22차 회의에서 심의한 후, 학교와 (주)○○건축사사무소가 합의하여 1,069,000천원을 증액한 총 계약금액 2,735,500천원으로 변경 계약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은 ○○시 ○○구청 도시건축과로부터 17동 연면적 18,601.45 m<sup>2</sup>(금회 중 12,710.25m<sup>2</sup>)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건축허가를 받아 “○○대학교 기숙사 및 교육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시 ○○구청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 ○○시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철거)을 받았으나, ○○구청의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 총장 ○○○는 관할 행정청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강의동 제\*\*동(일부), 제\*\*동및 기숙사 제12동(총장 관사)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수의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구매 및 용역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는 ‘○○리모델링공사’가 일반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주)○○와 161,000천원에 수의계약 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대상 11건의 시설공사, 총 2,004,000천원을 5개 업체와 수의계약 함

<사례 2>

○○대학교는 ○○○(주)와 “○○○○용역”을 수의계약(177,075천원) 하는 등 총 52건 (10,749,658천원)을 26개의 업체와 수의계약 함

<사례 3>

○○대학교는 ‘○○○○ 신축공사 감리’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주)○○건축사무소와 총 563,200천원에 수의계약함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은 학교 종합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도 없이 학교법인에서 ○○종합건설(주)을 양수하여 대표이사 ○○○(현 총장의 딸) 명의로 등록하여 내역서 작성도 없이 13,600,000천원에 “○○대학교 기숙사 및 교육시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학교법인 ○○학원은 ○○종합건설(주)가 영업정지 기간에 있어 공사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대학교 기숙사 및 교육시설 증축공사”를 ○○종합건설(주)와 13,600,000천원에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일반계약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제조·구매·용역·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사례 1>

○○대학교는 경쟁입찰 대상인 ‘입시홍보용 ○○대학교 ○○영상 제작’(구매금액 149,930천원)의 구매를 (주)○○○○(대표:○○○)과 수의 계약하는 등 경쟁입찰 대상인 물품구매 9건(총 금855,369천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광고(매체) 및 제작 대행’을 (주)○○○○과 체결한 계약 건은 수입물품 구입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인데도 선급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계약금의 40%인 528,000천원을 (주)○○○○에 선급하였고, 입찰 접수자 2인(입찰보증금 미납부) 중 1인이 중도 포기하여 실제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뿐이므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재공고 등의 정당한 절차없이 사실상 수의계약 하였으며, 특히, 입찰시 최소 공고기간이 10일임에도 동 입찰사항을 3일간 학교홈페이지에만 잠시 공고하는 등 협상에 의한 입찰 계약 3건(총 2,513,000천원)을 구매담당 부서(총무과)가 아닌 품의 부서(대외○○홍보과)에서 입찰구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입찰 공고기간을 최소 공고기간(10일)보다 6~7일을 단축하여 공고하고, 입찰(계약)보증서 및 선급금보증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증거서류 및 검사조서의 작성도 없이 선급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대학교는 (주)○○○○(대표 ○○○)와 “○○○○ 6층 연회장 ○○○공사(계약금액 18,000천원)”를 계약하면서 타 업체 견적서를 동 계약업체에서 대리 일괄 제출하게 하는 등 43건, 총 1,315,852천원의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시 계약업체에서 타 업체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악기(대표 ○○○)에 업라이트피아노 5대를 22,000천원에 구입하면서 타 견적서 또는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없이 단일 견적으로 구매하는 등 타 견적서 없이 총 6건, 127,600천원의 피아노(오르간)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2학기에 피아노(오르간)를 구매하면서 물품수급계획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악기(대표 ○○○)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등 5회에 걸쳐 총 105,600천원의 피아노 구매를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대학교는 (주)○○○와 각각 1,080,000천원씩 총 2,160,000천원(공사비 1,326,120천원, 집기비품비 835,880천원)을 투자하여 교육용기본재산인 ○○시 소재 건물 14, 15층에 ○○○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선금금으로 550,000천원을 지급하고서도 같은 날 동일 금액을 중복하여 (주)○○○로 출금하였고, 이를 알게 되자 550,000천원을 임의기금으로 현금 적립하여 실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 후 (주)○○○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면서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 77,000천원 전액을 대학이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주)○○○와 ‘예산·회계 분야 컨설팅’계약(108,000천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5,000천원을 지급한 후, 용역 관련 추진사항이 없는데도 당초 지출한 계약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 4>

○○대학교는 (주)○○○○(대표 ○○○)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청소·경비용역계약(계약금액 563,824천원)’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 및 최저시급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년 단위 계약 및 서면에 의한 개정의 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재계약(계약금액 865,368천원) 하면서 당초 계약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각각 5% 및 6% 추가 계상하여 일반관리비 16,634천원, 이윤 44,547천원 등 총 61,181천원을 근거 없이 증액 계약한 사실이 있음.

### 공사계약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15조 제2호 및 제3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조건 등을 공고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서, 설계서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시공,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는 ‘○○캠퍼스 사면보강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 후, 입찰참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까지 하고도 현장설명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현장설명 참가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현장설명 시 참석자 제출 서류의 일자누락 및 기입 오류와 입찰참가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후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입찰취소 공고를 하였고, 재입찰 공고 시 입찰취소 사유와 다르게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없이 이전과 같은 자격요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였음에도,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 응찰자인 (주)○○건설(대표 ○○○)을 낙찰자로 선정(계약금액 970,000천원)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대학교는 「○○센터 및 체육관 증축(2차) 공사」(계약금액 57,911,000천원, 공사기간 '09. 2. ~'11. 6.)를 집행하면서, 감리보고서에 따라 시공사인 (주)○○건설에 52,699,000천원에 정산하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총장 ○○○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공사에 ‘잔손보기 및 민원비용, 공사 외적인 사항’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1,40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주)○○건설의 하자 보수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302,300천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2회에 걸쳐 지급내역도 없이 697,700천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등 이면계약금 1,400,000천원 중 1,000,000천원을 (주)○○를 통해 근거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대학교는 (주)○○건설에 지급한 이면계약금 1,000,000천원을 총장 ○○○의 지시에 따라 조달하면서, 500,000천원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로부터 이자율 5.18%로 차입하고, 이를 (주)○○가 (주)○○로부터 계약보증금 50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처리하고, 나머지 500,000천원은 ○○대학교와 (주)○○(이상 “갑”)가 (주)○○(“을”)에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에 대한 10년간 사용·수익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보증금 500,000천원을 교비회계 세입처리 없이 (주)○○에 직접 입금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사례 4>

○○대학교는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계획설계 작품 공모”를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교내게시판에 공고, 4개 업체가 응모하여 (주)○○합건축사사무소(대표 ○○○)가 당선되었고, 또한, 건설추진팀회의에서 같은 공사의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결정한 후 교내게시판에 공고하였고,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학장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저가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서 학장 내부결재 기준 적용 시 낙찰되어야 할 (주)○○건축사사무소(입찰금액 1,550,000천원)가 아닌 (주)○○건축사사무소가 낙찰(입찰금액 1,666,500천원)되었으며, 학장 ○○○

은 위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관리계장 ○○○에게 밀봉하지 않은 채로 전달하였고, 직원 ○○○은 입찰시 사무국장 입회하에 밀봉된 예정가격조서를 개봉한 것처럼 낙찰자 선정 발표 후 증빙서에 부착한 사실이 있음.

<사례 5>

○○대학교는 (주)○○(대표 : ○○○)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2,750,000천원의 ‘국제교류센터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실내건축 설계용역이나 기숙사·원어민 숙소·게스트하우스의 샘플시공(Mock-up Test)은 1개월의 계약기간 안에는 완료할 수 없는데도 같은 용역계약에 포함시켜 계약하였으며, 같은 용역계약 중 실내건축 설계용역 부분(1,943,000천원)은 당초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 공사 설계용역계약’의 설계용역 범위와 동일한데도 중복 발주함. 또한, 위 공사 중 부도가 난 (주)○○건설과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공사비 305억원, 하자보수보증금 9억원)을 받지 않았고, 최종 공사를 준공한 (주)○○기업이 재정부실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공사비 579억원, 하자보수보증금 17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총 26억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사례 6>

○○대학은 ‘○○캠퍼스 사면보강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 후, 입찰참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까지 하고도 현장설명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현장설명 참가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현장설명 시 참석자 제출 서류의 일자누락 및 기입 오류와 입찰참가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후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입찰취소 공고를 하였고, 재입찰 공고 시 입찰취소 사유와 다르게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없이 이전과 같은 자격요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였음에도,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 응찰자인 (주)○○건설(대표 ○○○)을 낙찰자로 선정(계약금액 970,000천원)한 사실이 있음.

<사례 7>

○○대학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 업체의 시스템 유지 사업자 등록 및 실적 등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하여 참가업체 2개 중 시스템 유지 등록 업체인 (주)○○○○(대표 ○○○)가 탈락하고 유지보수 자격이 없는 통신공사업 및 통신기기 개발·제조·판매 등록 업체인 (주)○○○○○(대표 ○○○)을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 선정(계약금액 378,000천원)하였고, 또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인조잔디 설치 및 롤매트 트랙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공고한 후, 현장설명 시 참가업체 5개 중 자격요건에 부합한 업체는 (주)○○○○(대표 ○○○) 1개 업체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 하여야 할 사항을, 현장설명에 참석한 타 4개 업체들의 실적제한 문구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를 사유로 실적제한을 ‘인조잔디 설치 또는 롤매트 트랙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을 진행하여 (주)○○○○을 낙찰

업체(계약금액 749,200천원)로 선정된 사실이 있음.

<사례 8>

○○대학교는 ‘○○○○관 방화문 교체공사(계약금액 14,000천원)’를 시행하면서 적정 건설업 면허인 창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대표 ○○○)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1건, 401,450천원의 공사를 무면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미분리 발주

「전기공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법」 제21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는 ○○○(주)와 “○○동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7,865,000천원에 계약하면서 전기공사 773,991천원, 통신공사 155,361천원, 소방공사 113,153천원을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등 총 5건 18,264,700천원 중 전기공사 1,389,866천원, 통신공사 394,178천원, 소방공사 167,325천원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계약함

<사례 2>

○○대학교는 ‘○○과 실습장 증축공사’를 (주)○○건설과 계약(1,211,000천원)하면서, 전기공사 422,000천원, 통신공사 10,000천원, 소방공사 3,000천원 등 총 435,000천원을 각각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등 총 8건의 건축공사(총 26,252,450천원)에 전기·통신·소방공사(3,310,000천원)를 포함하여 발주함

<사례 3>

○○대학교는 ‘○○관 증축공사’를 ○○건설(주)과 계약(600,000천원)하면서 전기공사 42,367천원, 통신공사 7,081천원 등 총 49,448천원을 각각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등 총 2건의 건축공사(총 2,918,000천원)에 대하여 전기·통신공사(총 269,435천원)를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함

## 준공 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제55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한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사례 1>

○○대학교는 (주)○○(대표 ○○○)와 “○○○○센터 증축 건축공사”를 계약 체결 (11,200,000천원) 하여 준공 처리하면서, 용벽 부분이 미시공(미시공액 : 37,901천원)되었음에도 정산하지 않는 등 총 308,813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 물품관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 제49조,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사례 1>

○○대학은 규정에 근거 없이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전문적인 물품의 구매, 계약, 자산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분야별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있음에도 대행업체 선정을 추진하여, (주)○○(대표 ○○○)와 구매관리, 자산관리,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연간 용역비 206,448천원, 건별 수수료 3% 지급)을 체결하여 대행료 17,204천원 및 수수료 14,440천원을 지급하는 등공사·물품구매 업체 선정 및 자산관리 등에 대한 대행료 및 수수료로 총 25회에 걸쳐 572,369천원을 지급하여 학교 직원이 담당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사례 2>

○○대학은 (주)○○(대표 ○○○)과 ‘서버통합 및 재난복구시스템(DR) 구축사업’(계약금액 479,545천원)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내부 승인절차 없

이 계약서를 체결한 후,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기안 결정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502,345천원의 시스템구축사업 및 시설공사를 업체선정 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대학교는 전체 물품 35,060건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던 중 전산 DB와 일치하지 않는 물품이 많다는 사유로 재물조사를 중단하였고, '△△. 학교에서 보유중인 프로그램 총 8,851건으로 한정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서 감가상각 관련 회계자료와 맞춘다는 사유로 또 다시 재물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하였으며, '△△.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830건(17,777,460천원)의 물품 중 12,923건(4,332,207천원)의 물품이 망실, 파손, 타 부서 사용 등 실제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확인을 통해 변상, 불용 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 4>

○○대학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OMNI-9WX는 ○○기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도 대차대조표에 제외되어 있는 등 총 1,265,97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도 수증자산 누락분으로 밝혀진 13,000천원을 제외한 1,265,974천원에 대해 원인 파악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음

<사례 5>

○○대학교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물품 88,537점(47,492백만원) 중 47,799점(27,078백만원)은 사용가능, 3,518점(1,343백만원)은 폐기대상물품으로 분류하였으나, 37,220점(19,071백만원)에 대하여는 물품의 상태, 위치,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3년간 미확인된 물품이 72,109점에 이르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물조사를 종결함

기타 비용 정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는 (주)○○종합건설(대표 ○○○)와 484,000천원에 계약한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64천원에 대해 정산 처리하지 않는 등 21건 총 68,083천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디자인(대표 ○○ '△△. 5월 폐업)과 “○○○○ 리모델링공사”를 921,800천원에 계약 집행하면서 공사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 등 28건 총 계약금액 3,557,031천원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 2>

○○대학교는○○공사와 ‘○○○○교체공사’를 계약(135,981천원)하면서 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지 않는 등 6건 공사(계약금액 1,762,301천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서에 미반영하고, 5건 공사(계약금액 1,507,301천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총 48,437천원을 계약서의 원가계산서에 반영하고도 공사업체로부터 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하지 않고 전액 지출함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써 계약금액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사례 1>

○○대학교는 (주)○○○○(대표 ○○○)와 “○○○○공사”를 계약체결(275,000천원)하고 준공처리 하면서, 당초 계약된 준공기한을 127일이나 초과하여 준공계를 접수하였는데도 12,700천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총 17,026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